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교가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복무기간 합산 등>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85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였고, 2025년 1월 「군인보수법」이 개정되어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액을 지급함.

그런데, 연금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는 것과 달리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과 달리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한편, 2025년 1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추서 진급된 공무원 급여의 산정은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

월액을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
인과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2호).

Ⅲ. 검토의견

1.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 대한 복무기간 합산

현행법 제5조제2항은 부사관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장교가 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 시와 준사관이 부사관으로 임용 시에는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토록 하고,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생략)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u>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u>	② <u>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u> ----- ----- <u>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u>

하되, <u>준사관 또는 부사관</u>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u>교로</u> -----
③ ~ ⑨ (생략)	<u>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u> -----

	-----.
	③ ~ ⑨ (현행과 같음)

□ 국방부는 2020년도부터 육군 모집요강상 현역장교들의 준사관후보생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규정하였고, 2022년도에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병적종료 관련 조항들(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이 만들어짐에 따라 현역장교들이 군간부후보생으로 지원하여 교육을 받던 중 중도퇴교하는 경우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2022년부터 현역장교에서 항공 준사관후보생 과정에 입교가 시작되었음.

이에 국회는 2025년 1월 「군인보수법」을 개정하여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도 훈련기간 중에 후보생 선발 전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장교가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나 준사관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합산 규정이 없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과 달리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장교 및 준사관의 하향 병적 전환과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토록 함으로써 병적 전환에 따른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합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법적 미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방부는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함으로써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2. 특별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퇴직수당 지급

개정안은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¹⁾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에 대한 퇴직수당의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단서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퇴역연금 및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 -----. 1. (현행과 같음)

1) 「군인사법」 제30조(특별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단서 신설>	2. ----- ----- ----- -----산정한다. 다만, 전 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

□ 「군인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특별진급시킬 수 있고, 군인이 전사 또는 공무로 사망하여 순직처리된 경우,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법상 급여는 퇴직수당임.²⁾

그런데 법 제9조제2호는 퇴직수당을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토록 하고 있어, 특별진급된 군인의 퇴직수당을 특별진급 전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할 수 밖에 없음.

이로 인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 후술하는바와 같이, 순직한 군인의 그 유족은 「군인재해보상법」상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사자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해 「군인재해보상법」이 개정(2025년 1월)되어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특별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의 경우 공무로 사망 또는 전사하여 상위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0조가 동시에 개정(2025년 1월)되었음.

[관련 입법례 규정]

구 분	규 정
군인 재해보상법	•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다음 각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군인사망조위금(이하 "군인사망조위금"이라 한다)
공무원 연금법	•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생략)...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계급·직급 또는 직위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구 분	규 정
공무원재해 보상법	•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다음 각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생략)…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계급·직급 또는 직위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3.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4.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 따라서 개정안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을 특별진급된 계급에 맞추어 퇴직수당을 지급토록 예우함으로써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상 누락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군인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